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미애·백종헌·임이자

서명옥 • 안상훈 • 최보윤

이인선 · 조정훈 · 최수진

김예지 • 이종배 • 서지영

김기현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·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·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·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,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현행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 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"분야별로"를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
- 2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1조의2(수급추계위원회) ①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(이하 "수급추계위원회"라 한다)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성한다.
  - 1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·치과의사·한의 사 및 간호사
  - 2.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
  - ②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.
  - 1.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 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, 의료기관단체, 약사회 등에서

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

- 2.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, 소비자·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
- 3. 보건의료 관련 학회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
- ③ 제2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,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 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1. 경제학 · 보건학 · 통계학 · 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
- 2.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
- 3. 대학의 조교수,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- 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21조의3에 따른 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수급추계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

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(이하 "수급추계센터"라 한다)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
-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 -----다음 각 호의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 원회 ⑤ (생략) (5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1조의2(수급추계위원회) ① 제 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 력 수급추계위원회(이하 "수급 추계위원회"라 한다)는 보건의 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 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성한다. 1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 른 의료인 중 의사・치과의사

- 한의사 및 간호사
- 2.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약사
- ②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.
- 1.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 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, 의료기관단 체,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
- 2.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, 소비자・환 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 천하는 전문가 중 3명
- 3. 보건의료 관련 학회, 연구기

   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

   중 3명
- ③ 제2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,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

록 위촉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한다.
- 1. 경제학・보건학・통계학・인

   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

   자
- 2.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연구실적이 풍부한 자
- 3. 대학의 조교수, 연구기관의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- 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급추계위원 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보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 21조의3에 따른 수급추계센터 의 장으로 한다.
- 제21조의3(수급추계센터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 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

<신 설>

제2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 5. (생 략) <신 설>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 인력수급추계센터(이하 "수급 추계센터"라 한다)로 지정·운 영할 수 있다.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위원회의 기능) ①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
-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 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 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 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